

춘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55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22.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37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경까지 남동생 J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2.경부터 2017.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K 소재 C사에서 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는 C사의 주지승이고, I은 C사의 총무이다.

다. 2014. 6.경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금원이 인출되거나 송금되었다.

[표1 농협은행(D) 거래내역, 이하 ‘표1’이라 한다]

순번	날짜	출금액(원)	거래내용
1	2014. 6. 30.	1,000,000	L 송금
2	2014. 7. 16.	300,000	현금
3	2014. 8. 20.	200,000	현금
4	2014. 9. 1.	1,000,000	C사 송금
5	2014. 9. 22.	1,350,000	현금
6	2014. 11. 24.	1,000,000	M 송금
7	2015. 1. 16.	2,200,000	현금
8	2015. 2. 5.	1,000,000	현금
9	2015. 2. 23.	500,000	☐현금
10	2015. 5. 20.	1,000,000	☐현금
11	2015. 5. 20.	700,000	☐현금
12	2015. 7. 17.	200,000	☐현금
13	2015. 7. 31.	100,000	☐현금
14	2015. 8. 18.	1,000,000	☐현금
15	2015. 8. 18.	1,000,000	☐현금
16	2015. 11. 24.	500,000	N 송금
17	2016. 1. 5.	320,000	☐현금
18	2016. 1. 6.	90,000	O 송금

19	2016. 1. 11.	200,000	C사 송금
20	2016. 2. 3.	620,000	옌현금
21	2016. 2. 3.	100,000	옌현금
22	2016. 2. 16.	500,000	N 송금
23	2016. 3. 18.	400,000	옌현금
24	2016. 3. 18.	140,000	옌현금
25	2016. 4. 5.	100,000	피고 송금
26	2016. 4. 12.	200,000	옌현금
27	2016. 4. 20.	3,000,000	피고 송금
28	2016. 5. 9.	1,000,000	옌현금
29	2016. 5. 9.	420,000	옌현금
30	2016. 6. 8.	1,000,000	옌현금
31	2016. 7. 4.	130,000	C사 송금
32	2016. 7. 13.	100,000	피고 송금
33	2016. 7. 31.	50,000	피고 송금
34	2016. 7. 31.	100,000	I 송금
35	2016. 8. 1.	200,000	옌현금
36	2016. 8. 18.	500,000	N 송금
37	2016. 8. 18.	1,000,000	옌현금
38	2016. 9. 23.	1,000,000	옌현금
39	2017. 1. 12.	300,000	C사 송금
40	2017. 2. 23.	700,000	피고 송금
41	2017. 4. 12.	1,000,000	옌현금
42	2017. 4. 12.	480,000	C사 송금
43	2017. 5. 17.	500,000	피고 송금
44	2017. 5. 21.	300,000	옌현금
45	2017. 6. 15.	100,000	I 송금
46	2017. 7. 27.	340,000	C사 송금
47	2017. 7. 27.	200,000	옌현금
48	2017. 7. 29.	500,000	옌현금
49	2017. 7. 29.	500,000	옌현금
50	2017. 8. 14.	1,000,000	옌현금
51	2017. 8. 21.	1,000,000	옌현금
52	2017. 8. 24.	1,000,000	옌현금
53	2017. 8. 24.	1,000,000	옌현금
54	2017. 10. 6.	1,000,000	옌현금
55	2017. 10. 10.	30,000,000	C사 송금
56	2017. 10. 12.	(30,000,000)	순번 55 반환
계		34,140,000원	

[표2 국민은행(E) 거래내역, 이하 ‘표2’라 한다]

순번	날짜	출금액(원)	거래내용
1	2012. 8. 16.	1,000,000	현금
2	2012. 9. 26.	1,000,000	현금
3	2013. 1. 30.	700,000	현금
4	2013. 8. 13.	3,000,000	현금
5	2013. 8. 13.	100,000	현금
6	2013. 10. 8.	1,000,000	현금
7	2013. 10. 8.	100,000	현금
8	2014. 4. 27.	84,000	체크카드 석유
9	2014. 6. 16.	200,000	현금(홍천점)
10	2014. 8. 14.	1,000,000	C사 송금
11	2016. 10. 26.	850,000	현금
계		9,034,000	

[표3 신한은행(F) 거래내역, 이하 ‘표3’이라 한다]

순번	날짜	출금액(원)	거래내용
1	2013. 7. 3.	500,000	현금
2	2013. 10. 2.	130,000	P백화점
3	2016. 3. 31.	8,280,000	현금(홍천점)
계		8,9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는 농협은행계좌에서 34,140,000원, 국민은행계좌에서

9,034,000원, 신한은행계좌에서 8,910,000원 합계 52,084,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원고가 G로부터 받은 토지임대료 7,000,000원(= 월 임대료 1,400,000원 x 5개월)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단 인출한 위 금원과 편취한 도지세 합계 59,084,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사의 총무인 I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1 중 순번 2, 3, 5, 7, 8번과 표2 중 순번 11번 및 표3 중 순번 3번 기재 각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위 예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예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I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예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표1 중 M과 N에게 송금된 금원은 피고와 M 및 N에게 속아 원고가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의 부탁으로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의 일부 출금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은 없으며 신한은행 계좌 출금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지임대료 부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로부터 받은 토지임대료 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검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 부분(표1 순번 25, 27, 32, 33, 40, 43번)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4. 4.경부터 원고의

농협은행 통장을 보관한 사실과 표1 순번 25, 27, 32, 33, 40, 43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11, 12, 13, 14,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농협은행 예금을 무단으로 송금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2014. 6.부터 2017. 10.까지 위 원고 명의 농협통장에서 59,840,000원을 임의로 인출 및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원고가 C사에 거주하였고 병원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비, 교통비,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피고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66호)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원고 명의 농협통장에서 2014. 6.부터 2017. 10.까지 64,140,000원을 이체·출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 원고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2012. 8.부터 2016. 10.까지 9,077,000원을 이체·출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농지임대료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준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원고가 약 6년간 C사에서 무상 거주하였고, 이체 내역이 특정된 부분은 병원비, 흑염소 탕 값 등 사용처가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43호)을 하였다.

③ 피고는 위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납한 병원비와 C사 종무소 리모델링 비용 및 의료봉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2012.경부터 C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4.경 C사 종무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송금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피고가 이와 달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았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다. 나머지 금원 부분(표1 중 순번 25, 27, 32, 33, 40, 43번을 제외한 부분 및 표2, 3)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득을 피고가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피고 및 I을 상대로 이들이 원고의 신한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3. 500,000원, 2013. 10. 2. 130,000원, 2016. 3. 31. 8,280,000원을 임의로 각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춘천지방법검찰청 2020년 형제8498호)에서 담당검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출금내역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출금내역은 원고의 아들인 Q의 딸 R과 원고가 사용한 내역으로 추정되어 2013. 7. 3.자 및 2013. 10. 2.자 출금내역 역시 피고 및 I 외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2016. 3. 31.자 신한은행 출금전표에 기재된 A이라는 자필글씨가 육안상 I의 필체와 유사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감정 대상 글자가 3글자에 불과하여 감정대상자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가 I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 및 I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21초재912)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1 중 순번 2, 3, 5, 7, 8번과 표2 중 순번 11번 및 표3 중 3번 기재 각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거나 피고가 I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공동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표1 중 M과 N에게 송금된 금원이 원고가 이들에게 속아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가로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M 및 N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종선, 판사 조미연, 판사 김시원